

‘여수 보험살인 혐의’ 무기징역서 살아난 남편

금오도 방파제 차량 추락 아내 사망...보험금 17억 달해 1심 무기징역→2심 금고 3년→대법 금고 3년 원심 확정 대법 ‘의심가지만 고의 범행 아닐 수도’...살인혐의 무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사망이 A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17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차량을 바다로 밀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은 ‘살인’이 아닌 ‘과실’로 최종 결론냈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죄로, 금고 3년의 처벌을 받게 됐다.

◇“사고로 위장해 살해”→“과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4일 살인과 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씨

는 금고 3년의 처벌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밤 10시께 여수시 남면 금오도 인근 선착장의 방파제 끝에서 부인 B씨(당시 47세)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동차를 빠뜨려 아내를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A씨가 후진하다가 난간을 들이받은 뒤 상태를 확인한뒤 경사로에 차량을 정차시키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차량 변속기도 고의로 중립에 위치한 상태로 내렸고 밀어서 바다에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차량을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 움직임 등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승용차를 밀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고 ▲조명이 없는 심야시각, 용덩이와 돌 사이를 통과시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정차 위치까지 고려한 여건을 인위적·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재확인했다.

◇핵심 쟁점=차를 고의로 밀어 빠뜨렸는지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차를 후진시키다 뒤 난간에 부딪히자 A씨가 내려 뒷범퍼를 확인하러 간

사이 승용차가 경사면을 따라 굴러갔는데, 당시 차량의 주차브레이크는 풀여져 있었고 기어도 중립(N)인 상태였다. A씨가 하차할 당시 곧바로 차량이 굴러갔다. B씨가 옆에 탑승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단, 내릴 때는 멈춰있어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굴러가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은 A씨가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현장 검증을 통해 A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가능성을 확인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범행 동기도 1심은 경제적 어려움이 강력한 동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형성됐으리라는 점을 수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사고 직전 B씨 명의로 수령금

12억원 상당의 보험 6권이 가입된 점, 혼인 신고 이후에는 보험금 수익자 명의로 A씨로 변경된 점이 살인 혐의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A씨가 1억2500만원 상당의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7년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매달 30만원을 납부해왔고 소득도 일정해 살인 모의를 할만큼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고 직전 B씨가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사망 보험금을 높은 새 보험에 다수 가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면 수익자를 A씨로 변경한 것도 B씨가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구조행위에 대해서도 1심은 ‘피고인이 바다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 후 A씨가 인근 주민에게 구조를 요청할 당시 옷과 머리가 물에 젖은 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구조하지 않았다)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은 2년 6개월 선고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을 집행유예에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주장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코로나에 음주운전 단속 않는다?” 광주경찰, 추석 앞두고 주간도 단속

올 음주교통사고 17% 늘어 고베 늦추지 않고 적극 단속

“코로나19라고 음주단속 하지 않는다는 것, 오해입니다.”

광주경찰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야간뿐 아니라 주간에도 음주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음주 운전 단속방식이 변경된 뒤 음주단속이 사라졌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음주 운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 명절을 두고 음주운전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동 자체 분위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광주지역 음주교통사고만 401건으로, 8명이 숨지고 704명이 부상을 입었다.

수치만으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342건)보다 17.3% 늘었다. 사망자(5명)와 부상

자(618명)도 증가했다.

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음주단속 방식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간 상시 단속과 음주운전 취약지점에 대해 ‘스팍식 단속’을 수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자체했던 주간 음주 단속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낮 시간에는 점심시간 이후 음주운전을 할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다만, ‘일제 검문식’이 아닌,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골라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선별식’ 음주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고베를 늦추지 않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추석 연휴 음복 후 운전이나, 숙취 운전엔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말바우시장 모처럼 북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한때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던 광주 말바우 시장이 24일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제수용품을 사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자가격리 어기고 무단이탈 7명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코로나19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가격리 장소에서 벗어나 공원이나 카페 등을 방문하거나 우체국에 들러 택배를 발송하는 등 보건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행위는 시민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자가격리 이탈 등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풍력발전소 설치 완화 조례 화순군의회 상임위 통과

풍력 발전소 건설의 거리 제한을 완화한 조례 개정안이 화순군의회에 제1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주민들은 관련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철야 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화순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풍력발전소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해당 조례안은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의 경우 1.2km, 10가구 미만 거주지에서는 500m 이상 거리를 두면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애초 주민들 반대 속에서 3개월 전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약간 수정돼 다시 발의됐다.

앞서 10가구 이상인 경우 2km, 10가구 미만은 1.5km 떨어진 도로를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던 의원들이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풍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화순군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특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가 마치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모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